

의안번호	제 307 호
의 결 연 월 일	2023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
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변종오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5월 31일

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(변종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5월 31일
발의자 : 변종오, 이동우, 김종필,
김호경, 박지현, 박진희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, 상위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, 관련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 혼동을 막고자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변경함.

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·운영 조례

→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과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

나.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위치를 개정함(안 제2조)

다. 상위법령 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, 별표를 신설함

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
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3조,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·운영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편의시설 제공 및”을 “편의시설을 제공하고”로, “벤처기업 육성을”을 “벤처기업을 육성하기”로, “관리·운영”을 “관리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”를 “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”로, “청원군 오송읍 첨단의료복합단지(이하 “오송첨복단지”라 한다) 내”를 “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첨단의료복합단지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센터의 기능)”을 “(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오송첨복단지 내 기관·기업”을 각각 “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·기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오송첨복단지 내 기관·기업과 관련된”을 “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·기업 및 관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·기업에게 그 밖의 편의시설 제공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관리 및 운영의 위탁)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
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이용료)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
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.

③ 도지사는 도내 시·군이 센터 시설을 공용·공공용으로 이용하려는
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6조의 제목 “(운영비 지원)” 을 “(운영비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
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① 센터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, 수탁자부담금,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
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를
준용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관리·운영” 을 “관리 및 운영” 으로, “보고를 하게
하거나, 관계” 를 “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“명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” 을 “요구할” 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시설 이용료 (제5조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시설 이용료는 개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, 이용수요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증·감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- 시설별 이용료

구 분		면적(m ²)	금 액	비 고
게스트하우스	스탠다드(1인)	22	35천 원/일	부가가치세 포함
	특실(2인)	45	60천 원/일	
	다인실(5인)	47	80천 원/일	
회의실	대회의실	713	65천 원/시간	부가가치세 별도
	중회의실 1~3	101~103	25천 원/시간	
	중회의실 4	132	40천 원/시간	
	소회의실	65	20천 원/시간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</u> <u>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</u> <u>관리·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송첨단 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·기업에게 다양한 <u>편의시설</u> 제공 및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<u>벤처기업</u> 육성을 위한 <u>벤처연구센터의 관리·운영</u>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 충청북도 <u>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</u>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<u>청원군 오송읍 첨단 의료복합단지</u>(이하 “오송첨복단지”라 한다) 내에 설치한다.</p> <p>제3조(<u>센터의 기능</u>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오송첨복단지 내 기관·기업</u>에게 <u>벤처연구실</u> 제공 2. <u>오송첨복단지 내 기관·기업</u>에게 <u>공동장비실</u> 제공 	<p><u>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</u>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편의시설</u>을 제공하 <u>고</u> ----- ----- <u>벤처기업</u>을 육성 <u>하기</u> ----- <u>관리</u> 및 <u>운영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치) ----- <u>커뮤니케이</u> <u>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</u>----- ----- <u>청주시 흥덕구 오송읍</u> <u>첨단의료복합단지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<u>기능</u>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</u> <u>기관·기업</u>----- 2. <u>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</u> <u>기관·기업</u>-----

- 3.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·기업에게 회의실 제공
- 4.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·기업과 관련된 연구원에게 숙박시설 제공
- 5. 오송첨복단지 내 기관·기업에게 그 밖에 편의시설 제공

제4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도

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장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를 준용한다.

- 3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·기업-----
- 4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·기업 및 관련 -----
- 5.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·기업에게 그 밖의 편의 시설 제공

제4조(관리 및 운영의 위탁) 도지

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이용료 징수)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료, 시설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시설 임대료 등 그 밖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③ 도지사는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·공공용을 목적으로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 이용료 또는 시설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비 지원) ① 센터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, 시설 임대료, 수탁자부담금,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원활한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<신 설>

제5조(이용료)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.

③ 도지사는 도내 시·군이 센터 시설을 공용·공공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비) ① 센터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, 수탁자부담금,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·운영 상황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① -----
----- 관리 및 운영 -----
----- 보고하게 하거나,
소속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요구할 -----
-----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~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~③ (생략)

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②~⑤ (생략)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, 2022. 11. 15.>

1.~4.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, 2022. 11. 15.>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「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과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(안)」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, 관련 조례와 중복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